

업무 협약서

지스타 · KOCCA 한국 중소 게임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지스타조직위원회(이하 ‘지스타조직위’라 한다)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라 한다)은 ‘KOCCA’에서 추진하는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중소 게임사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상호 공동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KOCCA’에서 추진하는 한국 중소 게임사 대상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을 ‘지스타조직위’가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공정상생 환경조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 개선과 국산게임 역량강화 및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1. ‘지스타조직위’는 아래 사항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 지스타 전시장 내 중소 게임사 지원 목적 공간(BTB 비즈니스 지원 센터 등)의 독립부스 지원 및 지원 부스 수와 동일한 BTB 출입증을 제공한다.
 - 지스타 행사에 ‘KOCCA’ 후원명칭을 적절한 곳에 표기한다.
2. ‘KOCCA’는 ‘지스타조직위’가 제공한 전시면적에 ‘비즈니스 지원 센터’ 등 중소 게임사 지원을 위한 설비 구축 및 운영 일체를 수행한다.
3. ‘KOCCA’는 양 기관의 CI와 B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에 양 기관 CI와 BI가 적절하게 노출되도록 한다.
4. ‘KOCCA’는 게임유통지원팀 주관 행사 및 사업에서 ‘지스타’의 홍보를 지원한다.
5. 기타 협력 및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만료 도래 이전 업무 협약 내용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협약의 기간을 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약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협약 해지의 발효는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로 한다. 단, 제3호 혹은 제4호의 경우 즉시 해지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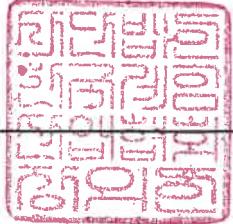
1. 본 협약의 책임사항 및 의무 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일방이 상대방을 부당히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양사 정책 또는 환경의 변화 기타 천재지변 등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공동 협력의 취지에 기반하여 논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또한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스타조직위’ 소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15일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 강신철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